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 특히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への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별표] 하단에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회비

용이 들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3.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산조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 순번 5 내지 15 기재”를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없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기관별 5,000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0만 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5,000원*
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20,000원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① (생략)

②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 내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20,000원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기관별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없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이상인 것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20,000원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5,000원*
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20,000원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상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예의 통보에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712